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74,916,639	41,247,499
일반회계	1,184,564,993	35,536,950
특별회계	190,351,646	5,710,549
공기업특별회계	167,672,985	5,030,1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665,370	1,099,9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135,843	1,924,07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1,772	2,006,153
기타특별회계	22,678,661	680,3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1,428	9,04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58,786	199,7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50,080	118,502
수질개선특별회계	7,006,045	210,18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22,679	126,6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39,643	16,18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28,1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